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9. 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8월 25일

다. 상정일자 : 제138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2008. 9. 2)

상정, 심사, 보류

제138회 임시회 제3차위원회 (2008. 9. 3)

상정, 심사,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과장 이 영 희

가. 개정이유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이 2008년 1월 출범으로 마포문화체육 센터를 관리·운영하게 됨에 따라 재단의 이미지와 위상 제고를 위하여 시설명을 마포아트센터로 변경하고, 공연시설 리모델링을 거쳐 전문공연장으로 면모를 갖추고 보다 질 높은 공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합리하게 책정된 시설사용료(대소 공연장 대관료 등) 등을 현실화하고, 부적절하게 표기된 법률 용어를 정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개정 내용

1) 마포문화체육센터를 “마포아트센터”로 시설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조례명 및 조례 내용 개정, 별표 중 시설명 개정(안 제명,

제1조, 제6조제1항, 별표의 제명)

2) 별표의 사용료 징수 기준 중 일부내용 개정 및 신설

가) 시설사용료 일반기준의 일부내용 정리

- (1) 토·일·공휴일의 경우 총 시설사용료의 할증을 20%에서 10%로 조정
- (2) 리허설, 준비 등 대관료는 기본대관료의 50% 적용하고 철야 대관료는 기본대관료의 100% 적용내용 신설
- (3) 평일 낮 공연에 한하여 기본대관료의 20% 할인 적용내용 신설
- (4) 대관승인 받은 대관자의 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사용료의 30%를 지정기일내에 납입하는 내용 신설
- (5) 기본대관료 할인 및 감면기준 신설
 - 장기대관의 경우 기본대관료에 한하여 10% 범위 안에서 할인 적용
 -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 기본대관료에 한하여 50% 할인 적용 등

나) 시설사용료 개별기준의 일부내용 정리

대공연장, 소공연장, 부대시설, 기타시설 사용료 현실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던 마포 문화체육센터를 2008년 1월부터 마포문화재단이 관리·운영함에 따라 기존의 구민회관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공연시설도 전문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고 시설명도 마포아트센터로 변경하였으며, 동 시설의 사용료도 현실화하였고, 일부 불합리한 법률 용어도 법제처의 법령안 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정리하고자 제출된 것임.

<주요 개정내용>

○ 동 건은 조례제명 및 조례내용 중 “마포문화체육센터”를 “마포아트센터”로 개정하고, 공연장 및 공연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대공연장인 “서울퍼포밍아트홀”을 “아트홀 맥”으로, 소공연장인 “아소홀”을 “플레이 맥”으로, 전시실인 “토정갤러리”를 “갤러리 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 <별표> 나. 개별기준 대공연장 사용료에서 현행 공연대관료는 1회에 100,000원이었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공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클래식·국악공연은 500,000원(400%인상), 연극·무용·재즈·오페라공연은 800,000원(700%인상), 뮤지컬은 1,000,000원(1,000%인상), 방송(촬영)은 1,200,000원(700%인상), 행사는 현행 1회에 150,000원에서 1,400,000원(833%인상)으로 인상조정하고, 소공연장 사용료도 현행 공연대관료는 1회에 60,000원이었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공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클래식·국악공연은 200,000원(233%인상), 연극·무용·재즈·오페라공연은 250,000원(316%인상), 뮤지컬은 300,000원(400%인상), 방송(촬영)은 400,000원(566%인상), 행사는 500,000원(733%인상)으로 인상조정 하였음.

○ 현행 음향, 조명, 영상장비, 부대장비, 냉·난방비 등의 사용료는 본 개정안에서 공연장 부대시설 사용료 항목으로 이동하여 규정하는 등 공연장 부대시설도 20개 품목이 신규로 규정되었음.

<검토의견>

○ 마포문화체육센터를 마포아트센터로 시설명을 변경하고 공연시설도 리모델링하여 전문공연장으로의 면모를 갖추에 따라 기존의

구민회관 이미지를 탈피하고 공연장 대관료 및 시설 사용료도 타 공연장 등과 대비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관련 법규도 정비하지 않고 마포문화체육센터를 마포아트센터로 시설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13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동 개정안에서 별표에 규정된 대공연장, 소공연장, 공연장 부대 시설 사용료가 대폭 인상된 것은 공연장을 리모델링하고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타 공연장에 비해 그 동안 낮게 책정되어 있는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당초 마포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볼 때 동 개정안에서 대폭 인상된 시설 사용료가 다소 과하지는 않는지 검토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